# 2024 개정
# 어린이집 평가

## 운영체계

교육부

한국보육진흥원

# CONTENTS


1 개정 평가제 개요

2 평가 운영 과정

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

# 1 개정 평가제 개요

# 어린이집 평가 사업 개요



## 기본 방향

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
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

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
안심 보육환경 조성

### 법적 근거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 (어린이집 평가)

### 평가 대상
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
모든 어린이집
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
### 평가 절차

평가대상 통보 → 자체평가 →
현장평가 → 종합평가 → 결과발표




### 평가 내용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1항과
관련된 평가지표

※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,
평가방법, 평가절차 등에 관한
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

### 수수료

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

# 어린이집 평가사업 개요



## 주요 경과

| '05 | '19. 6 | '24. 1. 2 | '24. 7. 3 |
|---|---|---|---|
| 평가인증제<br>신청 어린이집 대상 시행 | 평가제<br>모든 어린이집 대상 시행 | 평가제 개편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 | 개편 평가제 시행 |

## 평가제 성과

평가제 전환에 따라
모든 어린이집에 평가 실시

※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(인증) 유지 95.9%
('24년 4월말 기준)

보육서비스의 표준 정립을 통한
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
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

※ 평가결과 A, B등급 96.8%
('24년 4월말 기준)

## 평가제 한계

- 대부분 A, B등급으로 평가 변별력 약화
- 등급제로,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
- 필요서류, 환경정비 등으로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호소
- 시설설비 및 물적환경 등 구조적 질 평가 치중

# 2024 개정 평가제



"'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' 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"

※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공포 ('24.1.2.) 및 시행 ('24.7.3.)

## 평가제 개편 주요 내용

###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



- 영유아 **웰빙, 발달**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편
- 당일 **관찰과 면담** 위주로 평정방식 변경, **확인문서 최소화**

###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방식 개선

- 평가결과 **등급제 폐지**
- **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 제공**



### 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주도 평가 실시



-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·보호자에 의한 **자체평가 기간 확대**
-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**어린이집용·부모용 안내자료 지원**

### 컨설팅 중심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 지원

- 연차별 **자율관리**
- 자율관리 **컨설팅**
- 어린이집 질 **관리·개선 지원**



# 운영체계 주요 특징비교



| | 평가제 | 2024 개정 평가제 |
|---|---|---|
| 평가 지표 | 4영역, 18지표, 59항목 / 정량평가(N/Y)<br>구조적 지표(보육환경 등) > 과정적 지표(보육과정 등) | 6영역, 15항목 / 정성평가(서술형)<br>구조적 지표(보육환경 등) < 과정적 지표(보육과정 등) |
| 평가 절차 | 평가대상 통보 →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→ 현장평가 → 종합평가<br>대상 통보 (한국보육진흥원) →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(지자체, 어린이집) → 현장 평가 (한국보육진흥원) → 종합평가, 결과발표 (종합평가 위원회) | 평가대상 통보 → 자체평가 → 현장평가 → 종합평가<br>대상 통보 (한국보육진흥원) → 자체 평가 (어린이집) → 현장 평가 (한국보육진흥원) → 종합평가, 결과발표 (종합평가 위원회) |
| 평가 결과 | 등급제공 (A, B, C, D) |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|
| 평가 주기 | A,B 등급 : 3년 / C,D 등급 : 2년 | 3년 |
| 사후 관리 | 사후방문·확인점검<br>최하위등급조정 | 연차별 자율관리 및 컨설팅<br>재평가 |

#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



## 전체 지표 개관

개정 전 4영역 18지표 59항목 → 개정 후 6영역 15항목

### 평가지표 전·후 비교

| 평가제 | | 2024 개정 평가제 | |
|---|---|---|---|
| 영역(4개) | 지표(18개) | 영역(6개) | 항목(15개) |
|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| 1-1 영유아 권리 존중<br>1-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<br>1-3 놀이 및 활동 지원<br>1-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<br>1-5 보육과정 평가 |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| 1-1 일과의 충실한 운영<br>1-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|
|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| 2-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3 기관 운영<br>2-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|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| 2-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|
| 3 건강·안전 | 3-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<br>3-2 급·간식<br>3-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, 관리<br>3-4 등·하원의 안전<br>3-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|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| 3-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<br>3-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|
| 4 교직원 | 4-1 원장의 리더십<br>4-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<br>4-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<br>4-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|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| 4-1 관찰 및 실행 계획<br>4-2 보육과정 평가 |
| | |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| 5-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<br>5-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<br>5-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|
| | | 6 건강 및 안전 | 6-1 실내외 공간의 청결·쾌적성<br>6-2 급·간식 운영의 적합성<br>6-3 실내외 공간,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<br>6-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|

#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



## 과정적 질 지표 확대

개정 전 총 **4개 영역 중 1개** 영역 → 개정 후 총 **6개 영역 중 4개** 영역

보육서비스의 핵심요소인
**보육과정 및 교사-영유아 상호작용**에 대한
**평가 지표 및 비중을 대폭 확대**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

지표 전반에
**'아동 권리 존중'의 취지·목적**이 드러나도록 설정

### 과정적 질 지표 확대

**평가제**

| 영역(4개) | 지표(18개) |
|---|---|
|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| 1-1 영유아 권리 존중<br>1-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<br>1-3 놀이 및 활동 지원<br>1-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<br>1-5 보육과정 평가 |
|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| 2-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3 기관 운영<br>2-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|
| 3 건강·안전 (5개 지표) | |
| 4 교직원 (4개 지표) | |

**2024 개정 평가제**

| 영역(6개) | 항목(15개) |
|---|---|
|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| 1-1 일과의 충실한 운영<br>1-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|
|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| 2-1 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<br>2-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|
|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| 3-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<br>3-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|
|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| 4-1 관찰 및 실행 계획<br>4-2 보육과정 평가 |
|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(3개 항목) | |
| 6 건강 및 안전 (4개 항목) | |

#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



## 중복 지표 최소화

개정 전 **법률 규정 사항** 포함 → 개정 후 **상시적 관리 사항 위주**로 최소화

**과정적 질 관련 지표 중심 개편,**
지도 ·점검과 중복되는
구조적 질 관련 지표는 최소화하여
현장부담 완화

놀이터 설치 기준, 반편성 기준,
보수·복무규정 등
**주요 지도·점검 사항은 삭제**

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
**실내 공간의 청결 및 안전,**
**급간식, 등하원 안전** 등
6영역(건강 및 안전)에 존치

## 지표별 질 관리 제도

| 지표 구분 | 질 관리 제도 | 담 당 |
|---|---|---|
| 과정적 질 지표 | 보육과정-상호작용 중심 | 어린이집 평가 | 교육부·진흥원 |
| 구조적 질 지표 | 설치·인가 등 법률 규정 사항 | 지도점검 등 | 지자체 |

* 상시관리 지표 유지

#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



**준비서류 간소화** 개정 전 각 영역별 평가 문서 필요 → 개정 후 보육과정 관련 문서위주로 최소화

**'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'이라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부합**할 수 있도록
**보육과정과 관련된 문서 위주**로 사전 준비서류 간소화

**평가 문서**

| 구 분 | 운영 | 보육 | 교직원 |
|---|---|---|---|
| 개 정 | [ 2종 ]<br>부모면담기록<br>운영계획<br>(연간보육계획 포함) | [ 3종 ]<br>월간(또는 주간)<br>보육계획<br>보육일지<br>영유아평가 기록 | [ 2종 ]<br>상호작용<br>관찰지원 기록<br>교육관련 기록<br>(이수증 등) |

※ 7종 이외에 기존 평가문서 삭제

# 평가지표 주요 개정사항



## 평가내용(세부 평정기준) 개정

개정 전 **평가항목별 분절적** 기준 → 개정 후 **종합적·통합적** 기준

**과정적 질 지표 확대와 서술형 평가 결과 제공**에 따라,
기존의 분절적 평정기준을 **종합적이고 통합적 평정기준으로 개정**

### 평가내용 개정방향 (예시)

| 평가제 | | | 2024 개정 평가제 |
|---|---|---|---|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| 평가내용 |
| 1-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| 1.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| Y / N | **1-1 일과의 충실한 운영**<br>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,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, 신체 리듬,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.<br>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·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. |
| | 2.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. | Y / N | |
| | 3.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. | Y / N | |
| | 4.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| Y / N | |
| | 5.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| Y / N | |

한국보육진흥원

KCE Korea Childcare Evaluation

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

# 2 평가 운영 과정

# 운영체계

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준비 | 상시 자체점검 | 어린이집 | 육아종합지원센터 | 사전 컨설팅 |
| 평가대상 통보 | 평가일정 통보 | 한국보육진흥원 | 어린이집 / 지자체 | 평가대상 확인 |
| 자체평가 |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| 어린이집 | | |
| 현장평가 |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| 한국보육진흥원 | | |
| 종합평가 | 평가결과 결정 | 종합평가위원회 | | |
| 결과발표 | 평가결과 사전통지 및 최종통보 | 교육부 (한국보육진흥원) | 소명심사위원회 | 소명심사 |
| 결과공표 | 통합 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| 교육부 | | |
| 평가 후 관리 | 연차별 자율관리<br>자율관리 컨설팅<br>어린이집 질 관리·개선 지원 | 한국보육진흥원 | 교육부 | 재평가 |

# 어린이집 평가 과정



1 대상 통보



2 자체 평가



3 현장 평가



4 종합 평가



5 결과 발표



# 평가대상 통보



## 평가대상 선정

평가대상 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
**평가 어린이집**

**차기 평가 도래 시기**에 맞추어
평가대상으로 선정

**신규 개원 어린이집**

**개원일로부터 6개월** 경과 후
평가대상으로 선정

휴지, 현원 0명으로 차기 평가 시기가 경과한 어린이집은
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

단,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은
기존의 평가결과와 평가주기 유지

⚠ **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, 방해 또는 기피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, 시정 또는 변경 명령**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 **가능**

# 평가대상 통보



## 평가대상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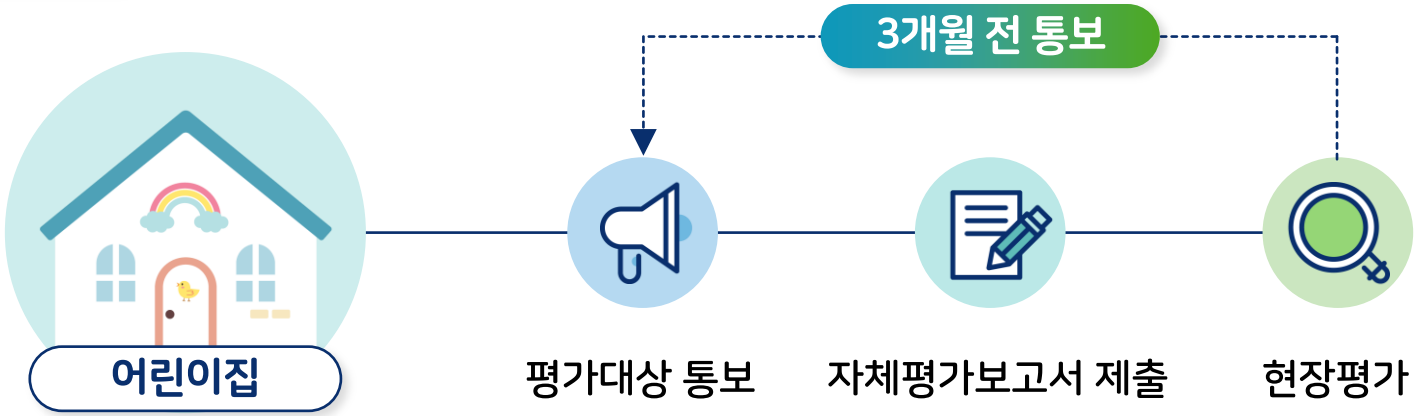


**통보시기**

현장평가월 기준
**3개월 전 실시**

**통보절차**

평가대상으로
선정된 어린이집에
대상선정 사실 및
평가일정을 통보

어린이집은 **10일 이내** '평가대상 통보서' 확인 후,
'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' 및
'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',
'전자문서통지 동의서' 제출

⚠ **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, 평가 거부,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**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 **가능**

# 평가대상 통보



## 평가시기 조정

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,
**당초 기수 기준 1~3개월 후**로 평가시기 조정 가능

### 신청기간

평가대상 통보월 말일까지
조정신청 가능

### 신청방법

평가대상 통보월 말일까지
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
조정신청

### 결과확인

어린이집에서 제출한
조정사유를 최종 확인 후
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

**인정 사유** 자체평가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



**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**
(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,
도배·장판 교체는 제외)



**보육교직원** (원장, 보육교사,
특수교사, 치료사)**의**
**출산에 따른 산전·후**
**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**



**보육교직원** (원장, 보육교사,
특수교사, 치료사)**의**
**2주 이상 장기 입원**

# 어린이집 평가 과정



1 대상 통보



2 자체 평가



3 현장 평가



4 종합 평가



5 결과 발표



# 자체평가



## 자체평가 절차




※ 대상통보월 익월부터 2개월간 실시

##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

- 원장, 보육교사,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~7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

※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, 원장과 원아 부모만으로 2인 또는 3인 구성 가능

## 자체평가 실시

- 자체평가위원은 자체평가 안내서에 수록된 지표를 살펴보며, 평가 항목별로 어린이집 수준 평가
-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, 자체적으로 개선

# 자체평가 :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


## 평가항목별 척도

- 평가항목별 1~5점 척도로 도달 수준 평가

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어린이집의 수준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전혀 그렇지 않다 |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 1-1 | 일과의 충실한 운영<br>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,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, 신체 리듬,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. 또한, 영유아의 비언어적·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. | 1 | 2 | 3 | 4 | 5 |

## 부모 종합의견 작성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소 경험하는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하여 기술
- 학부모의 의견을 원장이 직접 입력



**부모 종합의견**



우리 어린이집은 가정과 항상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점임. 아이 등하원 시킬 때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,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,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림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줌.
또한,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함. 이러한 노력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

## 부모용 체크리스트 활용

- 자체평가 안내서 활용
- 부모의 눈높이로 평가 가능한 부모용 체크리스트(별도 질문지)

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전혀 그렇지 않다 |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-1. 일과의 충실한 운영 | •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있나요?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| •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아이들의 관심사, 놀이, 건강이나 기분 상태,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나요?<br>※ 예: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계획이었으나, 아이들이 공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산책 활동으로 변경함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| •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, 교사는 이를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나요?<br>※ 예: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계획이었으나, 아이들이 공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산책 활동으로 변경함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
# 어린이집 평가 과정



1 대상 통보



2 자체 평가



3 현장 평가



4 종합 평가



5 결과 발표



# 현장평가



## 현장평가

-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

## 현장평가 일정확인

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완료한 어린이집 »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현장평가 주간 통보 »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 통보

**확인 방법**

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**확인 기간**

평가 주간: 현장평가월 1주일 전

평가 일: 현장평가 주간 직전 주

⚠ 고지된 현장평가일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. 다만,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(예: 보수교육, 상(喪), 휴원령 등)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간·일자 조정 가능

⚠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(영유아 재원)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 가능, 현장평가전 '현원 0명'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 중단

# 현장평가



## 현장평가 실시

- **어린이집 1개소 당 2인**(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) **또는 3인**(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)**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**



- **현장평가자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:00 ~ 09:30,**
  **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 15:30 ~16:30**

  ※ 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



- **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,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 후 현장평가 시작**



⚠ 평가과정 중 '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' 평가 결과에 반영, 시정 또는 변경 명령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 가능

# 현장평가



## 현장평가 실시

- **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**(영아반, 유아반 각 1반씩 포함)**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(인가공간)를 관찰**

  ※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 그 중 2개반을 선정하여 진행

- **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, 기록**(문서) **검토,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**

**기록(문서) 확인 기간**

| | |
|---|---|
| **보육일지, 월간**(주간 또는 일일) **보육계획안** | • **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**<br>예: 현장평가월이 11월인 경우 보육일지, 월간(주간 또는 일일) 보육계획안은 10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|
| **그 외의 기록**<br>(문서) | • **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연도 및 전년도 기록 확인** |

- **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**
  -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(원장 포함)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 불가

##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

###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

-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
-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/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

※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,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
(단, 전염병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)

### 필요 서류

1. **원아명단** : 평가 당일,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
2. **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** : 배치도는 실제 인가 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
3. **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** :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
4. **보육교직원**(원장, 보육교사) **경력 관련 서류** : 경력증명서,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
5. **평가지표 관련 문서** : 보육계획안, 보육일지 등

※ 1, 2, 3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,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

# 현장평가



## 현장평가 후 상호 확인

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 원장과 현장평가자는
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
'현장평가 상호확인서'에 서명

###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

영유아 정원/현원/출석 현황, 보육실 정보,
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

※ PC고장,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진행

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, 시정 또는 변경 명령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 가능

# 어린이집 평가 과정



1 대상 통보



2 자체 평가



3 현장 평가



4 종합 평가



5 결과 발표



# 종합평가



## 종합평가 진행

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, 현장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

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료 검토 후, 최종 영역별 평가결과서 확정

평가과정에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심의 후 평가결과서에 관련 내용 반영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
   -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 -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   -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
   -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
2.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3.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,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 -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
   -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   -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4.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거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

# 종합평가



##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

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통보월 이후
법 위반 및 행정처분,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·군·구에서는
교육부(한국보육진흥원)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 통보

어린이집 및 시·군·구에서 통보한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또는 평가주기 조정

###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

1.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2.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, 제45조, 제45조의2, 제46조, 제47조, 제48조)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 -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
   -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   -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
3.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, 아동학대,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어 수사, 재판 계류 중으로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

※ 법 위반(아동학대 포함)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평가기관(한국보육진흥원)에 보고

### 인가변동사항 발생

1.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2.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3.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, 현원 0명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

# 어린이집 평가 과정



1 대상 통보



2 자체 평가



3 현장 평가



4 종합 평가



5 결과 발표



# 결과발표



## 평가결과 사전통지

- **어린이집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말일 경*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**

  *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

### 평가결과 사전통지 전

| | |
|---|---|
| **사전통지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** |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발표,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함 |
| **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** | 사전통지 전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|

### 평가결과 사전통지서 확인

-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



## 소명

■ **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**

-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
  (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)

### 소명 절차

소명신청 → 사실조사 → 소명심사 위원회 개최 → 의결 (인정 / 불인정) → 결과통보 (최종통보) 및 후속조치

### 소명 결과

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



# 결과발표



## 평가결과 최종통보

- **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말일 경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**

  ※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



- **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**

  ※ 평가주기는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



# 결과발표



## 결과공표

■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(www.childinfo.go.kr)를 통해 공개

**공표 시기**

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일

**공표 내용**

평가상태, 평가결과, 평가이력

**어린이집 평가 상태**

| 구분 | 공표 내용 |
|---|---|
| • **평가를 받은 어린이집**<br>※ 평가제 개편 시행('24.7.3.)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| 평가완료 |
| • **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**(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) | 평가 중 |
| • **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** |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|
| • **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** |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중 |

※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 상태 공표 내용 없음

※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

## 결과공표

**평가결과서 예시** - 구체적 서술형 제공

| 영역 | 평가내용 |
|---|---|
|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| OO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,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해진 일과에 따라 운영하되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, 건강상태, 날씨 등을 고려해 일과를 조정하기도 합니다. 또한 등하원, 급간식, 배변, 낮잠(휴식) 시간에도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, 급간식 시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해 주고, 천천히 먹는 아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등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지원합니다. |

| 영역 | 평가내용 |
|---|---|
| 6 건강 및 안전 | OO 어린이집은 놀이기구, 놀잇감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,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시 지침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, 1년에 2회, 부모들이 직접 점검하는 '자체모니터링'를 진행하는 등 급간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조리실 위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|

# 평가 후 관리



01 연차별 자율관리

02 자율관리 컨설팅



평가 후 관리

03 어린이집 질 관리·개선 지원

0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, 평가주기 조정관리

# 평가 후 관리



## 연차별 자율 관리



어린이집이 지속적·자율적으로 보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
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
연차별 자율관리 실시

**대상**

**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**(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)

**내용**

**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, 평가지표와 연계한
조직역량진단(STEP+)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,
계획-실천-평가-환류의 과정에 따라 보육의 질 관리 실천**

- 별도의 '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'을 통해 진단 가능
  ※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 URL: https://www.kcpi.or.kr/step/
- 연중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

# 평가 후 관리



## 자율관리 컨설팅



어린이집은 '연차별 자율관리'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
'자율관리 컨설팅' 신청 가능

**대상**

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

**내용**

보육의 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
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행동 도출, 개선필요 사항 안내 등
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

- 사전교육 및 안내, 현장방문, 온라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

# 평가 후 관리



## 어린이집 질 관리·개선 지원



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을 관리·개선 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별 맞춤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 지원

**대상**

당해 연도 현장평가 참여 어린이집

**내용**

보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교육(온라인 교육 포함) 및 정보 제공

# 평가 후 관리





##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

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,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,
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

**법적근거**

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

-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

※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'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'으로 공시

# 평가 후 관리






## 재평가 대상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
  -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-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  -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
  -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

-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-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, 제45조의2 또는 제46조, 제47조,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-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
  -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  -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

-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거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

# 평가 후 관리





## 평가주기 조정관리

-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재평가 이외에 감염병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



# 평가 거부(방해 또는 기피) 시 조치



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,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행정처분 대상

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
| 운영정지 3개월 | 운영정지 6개월 | 운영정지 1년 |

## 평가 거부(방해 또는 기피) 사유

-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
- 평가에 관련된 서류(자체평가보고서,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)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,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-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(현장평가자 등)을 압박하는 경우
-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

# 평가 거부(방해 또는 기피) 시 조치



**처리절차** 평가 거부(방해 또는 기피)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, 교육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

### 현장평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
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
▼
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·확인
▼
교육부에 보고

### 현장평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

평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가 직접 작성
▼
현장평가자가 서명하고 종료
▼
교육부에 보고

-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통보하고
  시·군·구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교육부(한국보육진흥원)에 보고
-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

# 경과조치



**근거** 영유아보육법(법률 제19898호, '24.1.2) 부칙 제3조

-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
 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
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봄



-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
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 발생 시,
 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

# 감사합니다

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

교육부

KCPI 한국보육진흥원